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7. 4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7.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제안이유

○ 송내사회체육관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주요골자

○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함(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내용	답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관 내에서 가능한 경기 종목은 ○ 사용료 수입은 어디로 귀속되는지 ○ 소비자물가 정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석 규모로 핸드볼,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 실내경기 종목이 가능함 ○ 시수입으로 됨 ○ 개최하였으며, 적정 금액으로 결정되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3호
의결년월일	2001. 7. 14 (제88회)

제출년월일 : 2001. 7.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송내사회체육관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주요골자

-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함(안 제10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 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총 합 운동장	육 상 장 (트 랙)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관디구장	주 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 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 간	50,000	70,000	150,000	300,000
	시 민 운 동 장	주 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부 천 체육관	주 경 기 장	주 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야 간	90,000	135,000	330,000	495,000
	보 조 경 기 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송내사회체육관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테니스장		면 당	10,000	20,000	12,000	24,000
궁도장			10,000	10,000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 징수 ○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주잔디구장은 1게임을 원칙, 게임초과당 2할을 가산함 ○ 체육대회 등 행사는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별표 2]

연 습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종 합 운 동 장	육 상 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보 조 잔 디 구 장	1인 2시간	3,000	1,500
시 민 운 동 장		1인 2시간	500	300
부 천 체 육 관	주 경 기 장	1인 2시간	2,500	2,000
	보 조 경 기 장	1인 2시간	1,000	800
송 내 사 회 체 육 관		1인 2시간	1,000	800
테 니 스 장	면 당	1인 2시간	1,500	1,200
궁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
-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징수함
- 육상 경기장(트랙) 위명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 궁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징수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 이외 행사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 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종 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종 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주간	(현행과 같음)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야간	(현행과 같음)			
	주잔디구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주잔디구장	주간	(현행과 같음)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야간	(현행과 같음)			
	보조잔디구장	주간	50,000	70,000	150,000	300,000		보조잔디구장	주간	(현행과 같음)			
시 민 운 동 장	주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시 민 운 동 장	주간	(현행과 같음)					
부 천 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부 천 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현행과 같음)			
		야간	90,000	135,000	330,000	495,000			야간	(현행과 같음)			
	보조경기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보조경기장	주간	(현행과 같음)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야간	(현행과 같음)			
<신설>						순내사회체육관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테 니 스 장	면당	10,000	20,000	12,000	24,000	테 니 스 장	면당	(현행과 같음)					
궁 도 장		10,000	10,000			궁 도 장		(현행과 같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 징수 ○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주잔디구장은 1게임을 원칙, 게임초과당 2할을 가산함 ○ 체육대회 등 행사는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별표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부천체육관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2,500	2,000	부천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신 설>					송내사회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테니스장	면당	(현행과 같음)		
공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공 도 장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 ○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정수함 ○ 육상 경기장(트랙) 위명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 공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정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